

해외 소식

북핵 6자 회담 타결이 가지는 의의

1. 6자회담 전격 타결

남북한과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6개국은 지난 13일 중국 베이징 다오위타이에서 제 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 결과를 담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를 채택했다. 이날 합의는 지난 2005년 9월 제4차 6자회담에서 발표한 9·19 공동성명 채택 이후 약 17개월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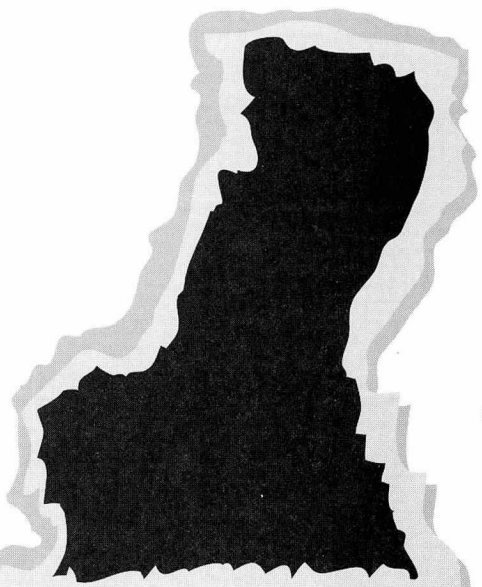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초기조치와 상응조치, 에너지 지원 규모 등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졌다"며 초기 이행조치로 북한에 제공될 에너지 지원과 관련, 5개국의 균등분담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북한 핵폐기 이행조치와 상응조치에 대한 공동문건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크리스토퍼 힐 미국 대표도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고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아직 한편에서는 이번 회담 타결이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이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2. 북핵 폐기를 위한 6자회담 진행 과정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은 13일 오후 4시 30분(중국 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핵폐기 초기이행 조치와 상응조치를 핵심으로 하는 합의문서를 발표했다.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숙소인 차이나월드 호텔을 나서면서 대북 지원의 원칙에 대해 "균등분담 원칙에 이의를 제기한 나라는 없다"고 밝혔다. 베이징 6자회담 참가국들은 13



일 북한이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조치를 이행하면 중유 100만 톤 상당의 에너지·경제·인도지원을 하기로 합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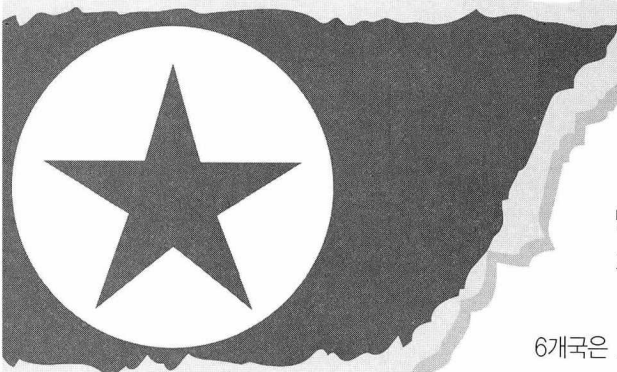
100만톤은 북한이 이날 이후 60일 내에 영변 핵시설을 폐쇄(shut down)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를 수용하면 5만톤이 먼저 지원되고, 플루토늄 생산을 불가능하게 하는 불능화(disablement) 조치를 추가할 경우 나머지 95만톤을 지원하는 2단계로 구성됐다.

또한 미국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삭제를 검토하고 적성국교역법의 적용을 면제하는 등 대북 적대시정책의 철회를 위한 회의(북미 관계정상화 워킹그룹)를 향후 60일 내에 개시하기로 했다.

6개국은 또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5개 워킹그룹(실무회의)을 1개월 내에 개최하기로 했고, 폐쇄와 중유 5만톤 지원이 끝나는 향후 60일 이후 동북아 안보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6자 외무장관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6개국은 이어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워킹그룹은 성명의 세부 내용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경제·에너지 협력 △북미 관계정상화 △북일 관계정상화 △동북아 평화안보 메커니즘 등이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북미·북일 관계정상화 워킹그룹은 양국의 협의체가 되는 한편 비핵화 워킹그룹은 중국이, 경제·에너지 협력은 한국이, 동북아 평화 메커니즘은 러시아가 의장국을 맡기로 했다.



3. 6자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

북한이 핵폐기를 향해 취할 조치의 수준에 따라 북한이 얻을 수 있는 보상이 철저히 연계되도록 규정된 것이 제네바합의와 다른 이번 합의의 가장 큰 특징이다. 제네바 합의의 경우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동결만 해 놓고도 연간 50만톤의 중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북한은 2차 북핵위기가 터질때까지 근 8년간 350만~400만톤에 달하는 중유를 받을 수 있었다. 또 경수로 공사도 북핵시설 해체를 전제로 한 동결의 대가로 진행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만약 북한이 이번 합의 이후 제네바합의 때 정도의 영변 핵시설 동결, 폐쇄라는 초기 이행 조치에 머문다면 5만톤의 중유밖에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북한이 취할 조치의 이행 시한의 경우 60일로 정해졌다.

또한 제네바 합의 당시에는 우리가 협상주체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협상결과물에 따른 경수로 건설비용의 70%를 분담하게 되는 부담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본을 제외한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4개국이 북한의 핵폐기에 대한 상응조치를 평등과 형평의 원칙에서 분담하도록 기재됐다는 점도 높게 평가된다.

사실상 중유와 경수로 제공 등에 그친 것이 제네바합의의 대북 지원조치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미국의 대테러지원금 해제, 적성국 교역법 적용 면제 등의 구체적 조치가 합의내용에 포함됐다.

그렇지만 이번 합의로 핵폐기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라는 평가도 있다. 북한이 이번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기존 핵 정책을 폐기쪽으로 잡았을지는 아직은 미지수라는 점 때문이다.

4. 향후 과제...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주도적 역할 필요

경색되었던 남북관계에 서광이 비추는 듯 하다. 북한 핵문제의 올바른 타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관계 대화가 재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미사일 발사 시험 후 중단되었던 대화를 하루속히 복원시켜야 한다. 대화채널이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교류가 원활히 진행되긴 어렵다.

북한의 대화를 피동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남북 당국간 대화가 재개되면 가장 먼저 다루어져야 할 문제로 대북 식량지원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문제와 이산가족 상봉, 경제협력구축방안 등에 대한 논의다.

동북아 전문가인 개빈 맥코맥 호주 국립대 교수는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북미 양자협상과 외교적 타결에 반대하던 조지 부시 미 행정부의 입장이 전적으로 바뀐 결과이며,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다자적 탈(脫)미국헤게모니 질서'가 동북아시아에서 형성되기 시작하는 첫 걸음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에 발맞춰 다음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진 6자회담 참가국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북한과 미국의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송민순 외교부 장관은 경수로 제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핵 폐기 진전 과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의제로 논의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기는 4월 중하순 쯤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제 오랫동안 쌓여있던 북미간 갈등도 씻어지고 있고, 2,13 합의로 6자 회담도 본 궤도에 올라가 있다. 북한과 미국간 외교관계도 수립도 예상되는 시점이다. 이번 합의는 한반도 비핵화 과정의 첫 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북한이 핵폐기를 자연스럽게 철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 과제이다. 민족의 상생과 번영을 위해 공동노력을 남북한이 기울여 평화적 기조를 통한 화해협력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참고)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주요내용

I. 참가국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조기에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와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공동 성명상의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참가국들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II. 참가국들은 초기단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병렬적으로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1. 북한은 궁극적인 포기를 목적으로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고 IAEA와의 합의에 따라 모든 필요한 감시 및 검증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IAEA 요원을 복귀토록 초청한다.
2. 북한은 9.19 공동성명에 따라 포기하도록 되어있는, 사용후 연료봉으로부터 추출된 플루토늄을 포함한 공동성명에 명기된 모든 핵프로그램의 목록을 여타 참가국들과 협의한다.

3. 북한과 미국은 양자간 현안을 해결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으로부터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북한에 대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 나간다.

4. 북한과 일본은 불행한 과거와 미결 관심사안의 해결을 기반으로, 평양선언에 따라 양국관계 정상화를 위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5. 참가국들은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의 1조와 3조를 상기하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 참가국들은 초기단계에서 북한에 긴급 에너지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Ⅲ. 참가국들은 초기조치를 이행하고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실무그룹(W/G)을 설치하는데 합의하였다.

1. 한반도 비핵화, 2. 북·미 관계정상화, 3. 북·일 관계정상화,
4. 경제 및 에너지 협력, 5.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Ⅳ. 초기조치 기간 및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흑연감속로 및 재처리 시설을 포함하는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를 포함하는 다음단계 기간중, 북한에 최초 선적분인 중유 5만톤 상당의 지원을 포함한 중유 100만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이 제공된다.

Ⅴ. 초기조치가 이행되는 대로 6자는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확인하고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장관급 회담을 신속하게 개최한다.

Ⅶ. 참가국들은 실무그룹의 보고를 청취하고 다음단계 행동에 관한 협의를 위해 제6차 6자회담을 2007년 3월 19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